



#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프로그램

**DLG Law Corporation**

#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,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준비하세요

<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국, 유럽, 미국 등 해외 게임사를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## 1. 국내 대리인 지정, 왜 필요한가요?

<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>(이하 '<게임법>') 제31조의 2에 따르면,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,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

국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.

- **게임 내 표시의무 이행**  
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과 같이 <게임법>에 따라 게임 내외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 이행
- **국내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보고**  
<게임법>에 따른 사후관리로서 유관 기관이 요청할 경우, 그 요청에 따른 보고 등
- **해외 게임사와의 연락 채널 유지**  
해외 게임사와 유효한 소통 창구 유지

→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국내 대리인의 회사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.

## 2. 법무법인 디엘지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프로그램 서비스 구성

법무법인 디엘지는 해외 게임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패키지와 맞춤형 옵션을 제공합니다.

### [국내 대리인 위탁 서비스(코드:S01)]

저희 법무법인 디엘지를 <게임법>에 따른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- **서비스 내용**
  - <게임법>에 따른 국내 대리인 역할 수행 (이용약관에 국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표기)
  - 표시의무 관련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원
  - 유관기관 보고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지원
  -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, 별도의 자문 패키지를 통해 대응 지원

### [게임 내 표시의무 준법 자문 패키지(코드:S02)]

<게임법>에 따른 표시의무 준수와 약관/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를 도와드립니다.

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같이 게임 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단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 게임 내에서 <게임법>에 규정된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,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# • 서비스 내용

-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/검토/수정
- 이용약관 작성/검토/수정
- 게임 내 표시의무 준수 상황에 대한 실사, 및 필요 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공

### [국내 법인 설립 패키지(코드:S03)]

한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주소 등을 둔다면, 별도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
한국에서 매출이 많거나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, 이 기회에 **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**일 수 있습니다.

#### • 서비스 내용

- 법인 설립절차 전과정에 대한 자문: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인 등기/사업자 등록 등 한국 내 대행 업무
- 외국인투자기업 신고/등록 대행 (해당 시)

### [추가 옵션]

- 사업장 임대 계약 체결 지원 (지정 공유 오피스 한정) (코드: S03-1)
- 근로계약 작성 지원(표준 근로 계약서 기준) (코드: S03-2)
- 대표자 투자비자 신청 (코드: S03-3)
- 세무 기장 서비스(세무법인 디엘지) (코드: S03-4)

## 3. 맞춤형 프로그램 옵션

### [A.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]

#### A1(코드:A01)

게임 내 표시의무 준법 자문 패키지 + 국내 대리인 위탁 서비스

→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,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공시 등 표시의무 준수를 검토한 경험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적합합니다.

#### A2(코드:A02) : 국내 대리인 위탁 서비스

→ 게임 내 표시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 인력이나 노하우가 있으나,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.

[B.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]

**B1(코드:B01)**

: 법인 설립 패키지 + 게임 내 표시의무 준법 자문 패키지

→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것이나, 게임 내 표시의무 이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

**B2(코드:B02)**

: 법인 설립 패키지 + 추가 옵션 + 게임 내 표시의무 준법 자문 패키지

→ 법인 설립과 연관 업무(근로계약, 세무, 비자 등), 그리고 표시의무 준법 조치까지 ALL-IN-ONE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

#### 4. 법무법인 디엘지의 강점

- 게임 산업 법률자문 전문성
  - 국내 우수 게임사, 글로벌 게임사, 중국 본토 게임사 등 게임사에 대한 자문 경험 풍부
  - 중국 본토 게임사에 대한 한국 게임 내 표시의무 프로젝트 다수 수행
- 다국어 지원: 한국어, 중국어,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
- 원스톱 서비스: 법인 설립부터 국내 대리인 업무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
- 전담 팀 운영: 전담 변호사 및 프로그램 지원팀 운영
  - 프로그램 전담 변호사: 박재영 변호사(파트너), 표경민 변호사, 최정윤 변호사

#### 5. 세부 프로그램 견적 제안 요청



[국문]



[중문]



[영문]

[세부 프로그램 견적 제안 요청] 옆의 QR코드를 통해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(예: S01 등 코드)을 선택하고, 해당 견적 제안 요청

#### 6. 관련 기사



[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관련 언론 기고문](#)

- [박재영 파트너 변호사](#)

# DLG' 법무법인 디엘지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, 8층 T. 02-2051-1870 F. 02-2051-1877

서울 | 실리콘 벨리 | 밴쿠버 | 프랑크푸르트 | 베이징 | 하노이 | 양곤 | 프놈펜 | 방콕 | 울란바토르

[www.dlglaw.co.kr](http://www.dlglaw.co.kr)